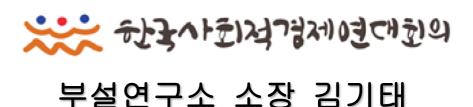
덕수궁포럼

"의료 ·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해와 과제

2024. 07.25



이 자료는 법과 관련된 내용은 24.6.24 국회 토론회 김용익님과 유욱님의 발표자료와 통합돌봄TF의 그동안의 논의, 임종한 의료사협회장님의 발표자료 등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인용구를 달지 않았으니, 혹시 자료를 대외적으로 활용하시려면 원본을 참조하여 인용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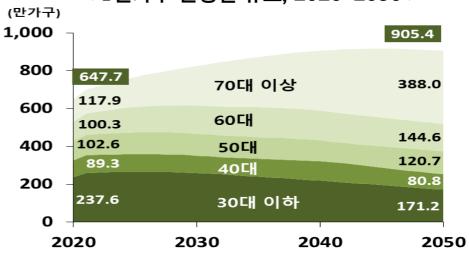
지역통합돌봄의 필요성

압축성장이 야기한 압축적 고령화 사회의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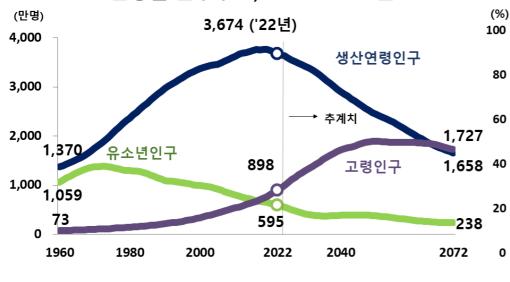
급격한 고령화가 예상되는 대한민국

- ❖ 2030년 초고령사회 진입
- ❖ 2070년 고령인구와 생산연령인구 1:1 상황 도달
- ❖ 2050년 고령자 1인가구 460만 가구
- ❖ 급격한 고령화 사회의 도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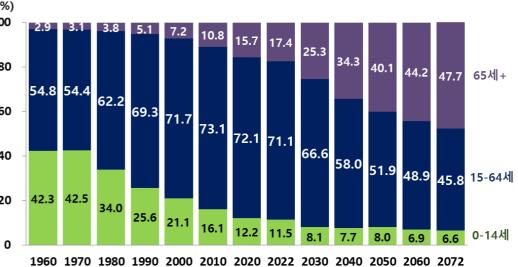
< 1인가구 연령별 규모, 2020-2050 >



< 연령별 인구구조, 1960~2072년 >



< 연령별 인구구성비, 1960~2072년 >



압축성장의 그늘 : 빈곤 고령가구의 증가

사회양극화는 건강 불평등을 증가시키는데, 빈곤 고령가구의 피해는 더욱 심각

❖ 노인 빈곤가구: 2014년 42.7% , 0ECD 1위. 세계 최악국가군



장기요양원으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섬

❖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로

숨 멈춰야 해방되는 곳...기자가 뛰어든 요양원은 '감옥'이었다

[창간기획]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1부 돌봄orz ①요양원에 갇힌 노인들 '요양보호사 취업' 한겨레 기자 한달간 직접 일하며 현장 기록 매일 똑같은 일정에 인권 뒷전...식사는 빨리 대변 묻어도 방치

시니어가 바라보는 요양원의 문제점

△ 김종광 기자 │ ② 승인 2020.07.30 17:00 │ ⊕ 댓글 1

시니어 매일

요양원 수익중심 탓 할순 없지만 입소자 삶의 질도 중요 질적 서비스 향상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이 지름길 부정적인 어두운 면 불식은 요양원의 시급한 현실

"노인 1명당 160만원 챙겨요" 돈벌이로 전락한 노인요양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 1 2017-10-09 07:00

시장에만 의존한 저질 노인 복지…"공공영역 늘려야"

공익 근무 때 양로원과 데이센터에서 일해본 동생은 영화의 내용이 정말로 현실적이라 평했다. 자신 역시 그 곳에서 일하며, 노인분들의 쓸쓸하고 비참한 말년 모습에 대해 많이 목격했다고. 하긴, 과대 포장된 가짜 현실 보단 작고 초라한 상자에 담겨 있더라도 진짜 현실이 낫지, 하는 생각이 든다.

Brunchstory, "영화 소풍, 가족 영화…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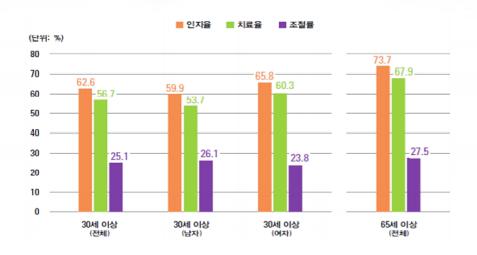


고령화에 대비한 준비가 부족한 보건의료 현황

재원 조달 체계 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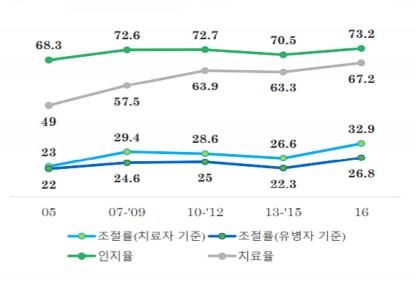
- ❖ 의료기관 민간의료기관 비중 90% 이상
- ❖ 국가건강보험체계 (NHS): 보장수준 65%
- ❖ 진료비 보상 체계: 행위별수가제
- ❖ 사전예방 의료가 어려워 만성 성인병의 조절율이 낮음

"2016년 기준 **당뇨병** 인구 관리 수준"



출처: 국민건강영양조사(2016),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2016)

"당뇨병의 인지율, 치료율은 고혈압과 유사하나, 조절률은 26.8%(유병자기준)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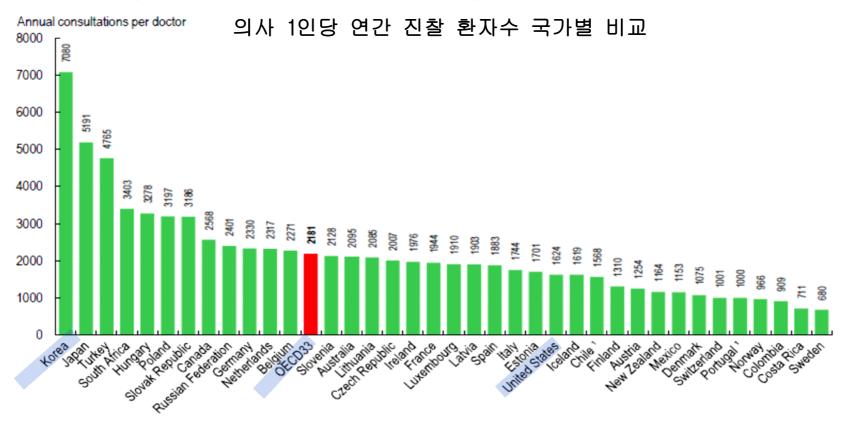
출처: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관리본부, 2017)

고령화에 대비한 준비가 부족한 보건의료 현황

의료제공체계 부실 : 취약한 일차(보건)의료 기반/주치의제도 부재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17633

Figure 9.2. Estimated number of consultations per doctor, 2017 (or nearest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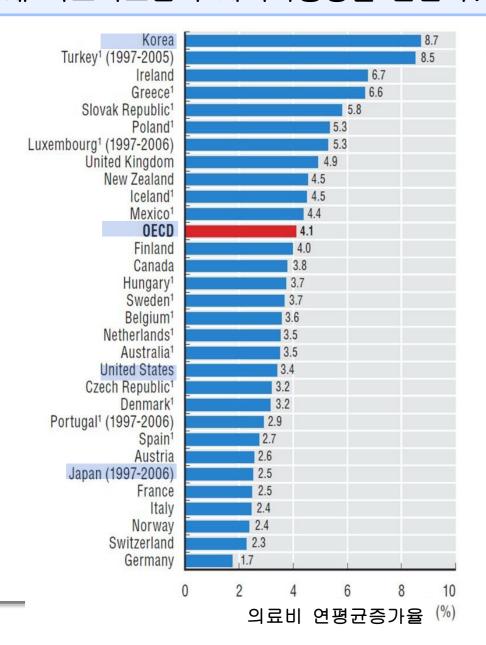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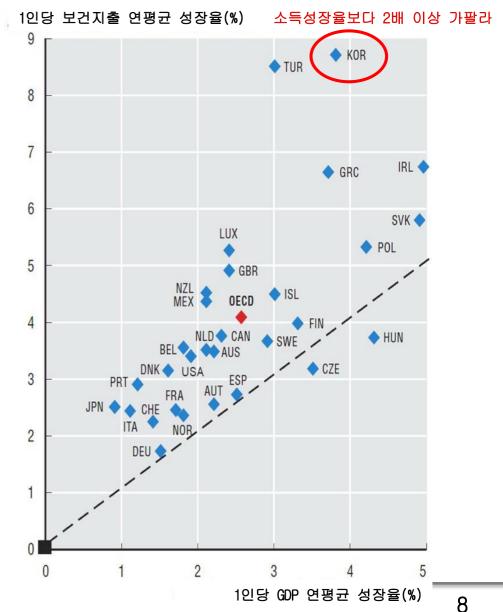
In Chile and Portugal, data for the denominator include all doctors licensed to practice.
 Source: OECD Health Statistics 2019.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017652

의료비도 압축성장(?)하는 대한민국

현재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묻는다.





현행 의료체계와 요양원 중심 돌봄체계는 지속가능하지 않아

서비스질을 유지하면서 고령자의 의료 & 돌봄비용 절감 방안 모색 필요





- 2022년 GDP 대비 10% 추계 -> 2030년 400조 원 16% 예상
- 2023년 건보수지 적자 예측 -> 1조4000억원(2023), 8조9000억원(2028) -> 적립금 모두 소진

정형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를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의 방향성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 2023

지역사회통합돌봄이 필요하다

정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

가치

Aging in Place(AIP):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커뮤니티

케어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복지체감도 제고 /

포용적 복지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노인의료비 부담완화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방분권과 책임성 강화

주민의 사회복귀 및 정착에
 지역사회의 책임 강화

지역사회 네트워크 복원

당사자와 주민들의 인식제고및 참여 강화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부천시의 의료급여 수급자 현황과 예산 현황

의료급여 상승을 절반으로 줄여도 60억 절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 현황

(기준:2024.5./단위::천원)

	2024년 예산(A)						
사업명	계	보조금			2023년	증감	비고
		국비	도비	시비	예산(B)	(A-B)	
계	154,264,400	123,409,920	21,596,950	9,257,530	132,880,400	21,384,000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152,942,900	*122,354,320	*21,412,006	9,176,574	131,460,700	21,482,200	 수급자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 1중 수급자 매월 6,000원
본인 부담금 등	1,252,200	1,001,760	175,522	74,918	1,283,700	△31,500	요양비, 장애인보조기 본인부담보상금·상한제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 등
재가의료 급여 시범사업	32,800	26,240	4,592	1,968	100,000	△67,200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지원
행정 운영비	36,500	27,600	4,830	4,070	36,000	500	의료급여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운영비

※ 국도비사업 :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437억 6,633만원 道 의료급여기금 예탁 운영 (시 예산 미편성)

지역통합돌봄지원법 이해

지역통합돌봄지원법 이해의 필요성

제정 및 발효를 둘러싼 상황 이해

- ❖ 24년 2월 29일 국회 통화, 2년 후인 2026년 2월 발효
- ❖ 경과기간이 2년이나 긴 이유는 이 법의 실행을 위한 구체적 상이 부족하기 때문
- ❖ 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 안에 비해 미흡한 수준
- ❖ 현 정부도 사회서비스, 노령화 문제로 제정 동의

법의 의미와 위상

- ❖ 지역통합돌봄에 대한 목적, 내용, 수단을 규정한 최초의 법.
- ❖ 기본법적 수준 제도화가 이뤄짐(관련 타법 우선, 실행법의 성격도 병행)
- ❖ 잘 실행되면 획기적인 법, 소극적 혹은 기존 구조 극복 못하면 사문화 가능성 (특히 현 정부 아래에서 적자 누적 상태 지속 우려, 재정 세부계획 유보가능성)(현 정부의 시장우선주의가 지역통합돌봄 구체화 논의를 왜곡 우려)

지역통합돌봄지원법 제정에 따른 예상과 이슈

시행 준비 2년 내외의 예상

- ❖ 전국 지자체의 지역통합돌봄 시행 의무화 : 현재는 시범사업형 돌봄
- ❖ 지역통합돌봄 논의&공약 급증 예상 : 26.3 발효 → 26.6 지방선거, 27.3 대선
-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합종연횡이 나타날 것임 (사회적경제, 돌봄의 포지셔닝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중요한 핵심 쟁점 및 이슈

- ❖ 구체적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형태 설계?(참여주체, 일반사업, 돌봄생활자 범위 및 선정기준, 플랫폼, 재정, 기본수익)
- ❖ 통합돌봄법의 시행전 개정의 폭과 내용을 둘러싼 조정
- ❖ 정부 기관간 역할 및 재정 분담(중앙[복지,노동,행안 등]-광역-기초-건보 등
- ❖ 요양시설의 시장축소 반발, 기존 유사 사회서비스 업체 반발
- ❖ 읍면동 통합돌봄 주체 구성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or 갈등

지역통합돌봄지원법의 전체 구성

- **제1장 총칙** (제1조 내지 제4조)
- 제2장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 내지 제9조)
- 제3장 통합지원 절차 (제10조 내지 제14조)
- 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 (제15조 내지 제19조)
- 제5장 통합지원 기반 조성 (제20조 내지 제25조)
- 제6장 보칙 (제26조 내지 제29조)
- 제7장 벌칙 (제30조)
- 부칙

제1장 총칙 (1조 목적)

제1조 이 법은 <u>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u>이 <u>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u>수 있도록 <u>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u>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국민의 건강하고 인</u>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단 해설

- ❖ 대상자 :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 바람직한 상태 :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 영위(핵심 목적)
- ❖ 방법 : (각각 떨어져 있던 그동안의) 돌봄지원을 통합·연계
- ✓ 대상자의 범위를 노쇠, 장애로 한정. 보육 등은 제외(전국민 돌봄보장을 포함할 것인지 아닌지 검토되어야): 원리로는 맞지만, 재원을 둘러싼 쟁점 발생

제1장 총칙 (2조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통합지원"이란 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u> 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이하 "보건의료등"이라 한다)을 <u>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u>하는 것을 말한다.
- 2. "통합지원 대상자"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이하 "노쇠등"이라 한다)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간단 해설

- ❖ 통합돌봄 제공 주체 : 국가와 지자체장
- ❖ 대상자 :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한정, 대통령령으로 정함 (대통령령에 구체화된 내용 포함 필요, 법개정 논의 필요)
- ❖ 관련기관 : 개인사업자 포함, 서비스 제공자(관련기관 범위의 제한 필요성 검토 :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로 한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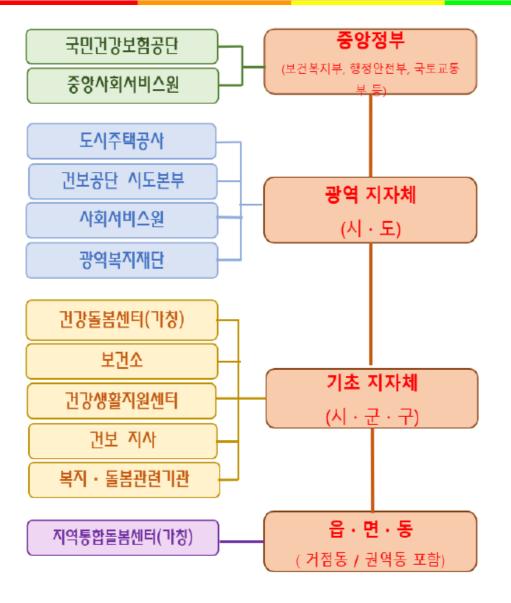
제1장 총칙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통합지원 <u>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u>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u>필요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u>할 것
- 2. 통합지원 <u>대상자가 필요에 따라</u>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하여 이용한 이후에도 자신이 살던 곳을 중심으로 끊김 없이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는 <u>재가 완결형 통합지원 연계 체계를 마련</u>할 것
- 지역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생활권 단위의 충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지원 생 태계를 조성할 것
- 4. 통합지원 <u>대상자</u>가 통합지원의 내용, 이용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용 여부나 범위, 방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u>자기결정권을 보장</u>할 것
- 5. 통합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 6. 통합지원 대상자를 돌보는 <u>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u>할 것
- ③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u> 관할 지역에서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u>인프라 및 재원을 확보하여</u> 시·군·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u>국가는</u>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u>필요한 행정적·재정</u> <u>적 지원을 하여야</u> 한다.

- ❖ (기초)지자체의 책무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지만,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책무는 1항과 3항, 4항에서 선언적으로만 표현
- ❖ 향후 광역/중앙정부 책무의 구 체화 필요/국회의 견제시스템 추가 필요
- ❖ 생활권 단위 주민참여, 예방적 건강관리 포함 포괄제공 지원 체계, 대상자 자기결정권 보장 (실질적일 수 있도록 합리적 돌봄비용 책정 필요), 가족 보 호자 지원 등은 진일보

제1장 총칙 (참고: 행정조직 역할 분담 예시)



- 전국화 사업의 기획·점검
- 예산,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 등 지원
- 관련 지방정부 조직·인력 등 여건 조성 등
- 돌봄 관련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지원
- 광역 단위의 사업기획·점검("사업단 ' 구성 등)
- Care Economy 등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주거, 보장구 등)
- 각종 관련협회, 단체 등 자원협력, 연계 지원 (지방의료원, 의사협회, 간호사회, 돌봄관련단체, 주거관련협회 등)
- 우수사례(기초지차체)의 전파 및 실무자 교육 ·훈련 ·홍보 강화
- 지역단위의 서비스 기획 및 집행
- 서비스 제공기관 지도, 감독
- 돌봄 관련 전담조직(과,국)설치 및 인력(특히 간호, 사례관리) 충 원 및 재배치
- 실제적인(자원연계, 서비스매칭 현황 등) 정보화시스템운영
- 사례관리(케어매니지먼트) 기능 담당('케어 매니저 ' 포함)
-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한 서비스게이트웨이 (이용자 발굴, 서비스 신청 등)
- 일차적인 'care plan'의 수립

(변재관 외 5인, 전국민돌봄보장 전략화 구상, 2023. 9. 20.)

제2장 통합지원기본계획 수립 등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시행 구조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사회보장 기본계획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연계 돌봄통합지원법 제5조 제3항 협의 심의·확정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통합지원 기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돌봄통합지원법 돌봄통합지원법 시·도지사 (돌봄통합지원법 제5조) 제23조) 제5조 제1항 제5조 제4항 조정 권고 수립·제출 실태조사 돌봄통합지원법 돌봄통합지원법 제6조 제3항 (5년마다) 실태조사의 항목 제6조 제2항 공간적 범위, 조사 방법 법 7조 지자체 위탁범위 등이 부령으로 위임. 통합지원 지역계획 평가에 관한 심의 · 자문 통합지원협의체 시민사회 통제 애로 (돌봄통합지원법 제6조) (돌봄통합지원법 (법, 시행령 승격 검토) 돌봄통한지원법 제20조) 제20조 제2항 제1호 조정 권고 수립 · 제출 돌봄통합지원법 돌봄통합지원법 제6조 제2항 제6조 제3항 시·군·구 의견 청취 지역주민 등 통합지원 지역계획 이해관계인 (돌봄통합지원법 제6조) 돌봄통합지원법 제6조 제2항

제3장 통합지원 절차

10조 1항)대상자의 신청 2항)지자체의 발굴 및 조사

11조 퇴원환자의 통합지원 연계

전담 공무원 TO 확대 없이는 공염불



요양시설의 평가제도 조정 없으면 공염불

12조 종합판정



13조 개인별 지원 계획의 수립 등

사실상 이 단계에서 관련기관 의뢰가 이뤄질 것 읍면동 전문성 & 밀착성 추구의 균형 필요 : [사경+실행단체 전략적 제휴 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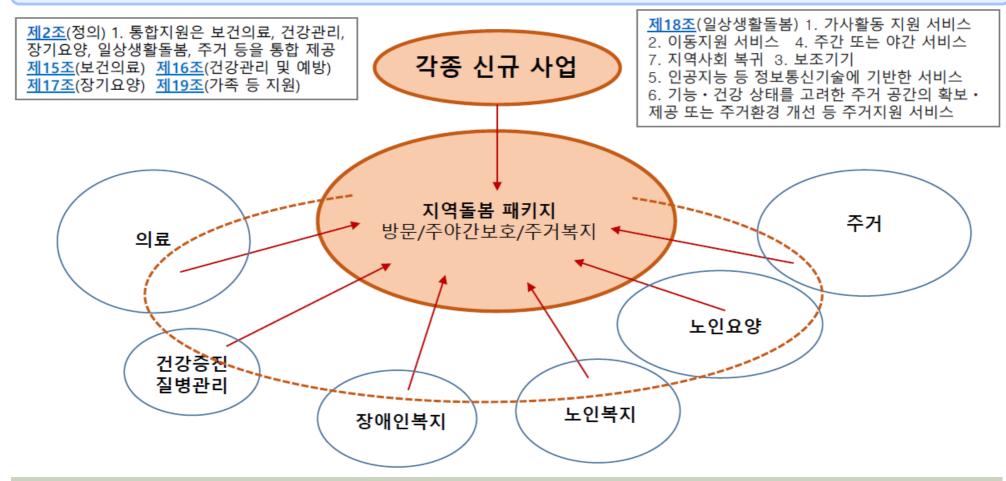


14조 통합지원 제공(지자체 직접 혹은 관련기관 의뢰) 등

읍면동 민간단체 vs 기존 복지기관 vs 대기업 파견 중 택일 될 것 종합판정 및 개인지원계획 수립 업체와 지원 제공업체들의 관계 정립 필요

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

법령 개정&지원정책 수립 전 필수 과제 : 기존 사업과 신규사업의 개발, 배치



기존 사업도 읍면동 전달체계와 연결되게 조정 필요 신규사업도 일반 적용 신규사업과 지역별 개인별 특성 선택 신규사업으로 구분하여 고민해야 이 작업에서 의미있는 사업 제안&실행력을 가진 곳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을 것임

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돌봄관련 항목)

18조 일상생활돌봄(새로운 법적 규정)

제1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심신기능을 유지·향상하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과 조 례에 따른 다음 <u>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u> 노력하여야 한다.

-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재가 자립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등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등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서비스
- 3.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에 관한 서비스
- 4.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주간 또는 야간 동안 적합한 시설ㆍ기관에 통원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
- 5. 통합지원 대상자의 안전 및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위한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
- 6. 통합지원 대상자의 기능·건강 상태를 고려한 주거 공간의 확보·제공 또는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지원 서비스
- 7.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
- 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 9.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서비스

- ❖ 관계법령이 특정 되지 않은 상태
- ❖ 확대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
 법개정
 시행령 구체화
 민간의 제안이
 우선되어야

제4장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 및 지원 (돌봄관련 항목)

17조 장기요양

제17조(장기요양)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는 노쇠등으로 인한 통합지원 대상 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확대하 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1 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 항에 따른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제15조에 규정된 진료서비스, 간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요양병원 등의 의료 서비스, 호스피스 사업, 방문 구강관 리, 복약지도 등을 17조 장기요양과 제18조의 시설ㆍ기관 에 통원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서비스, 의료 보조 기기에 관한 서비스,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

양자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간호 직 공무원이 통합돌봄창구에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들을 통해 방문건강관리 등이 이루어지며, 일차 의 료에까지 연계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가 능함

(장민선 「커뮤니티 케어 법제도적기반연구」62면)

돌봄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구현해야 하나? 의료사협/동네병원과 연결 방식은?, 간호법 제정 후 간호조무사 등의 일상간호활동의 범위 규정?, 요양보호사의 간호범위 확대?

공무원T.0 조정. 재정 필요 시군구 전담조직 및 읍면동 지원조직 분장 필요

21조 전담조직 등의 설치운영

25조 전문기관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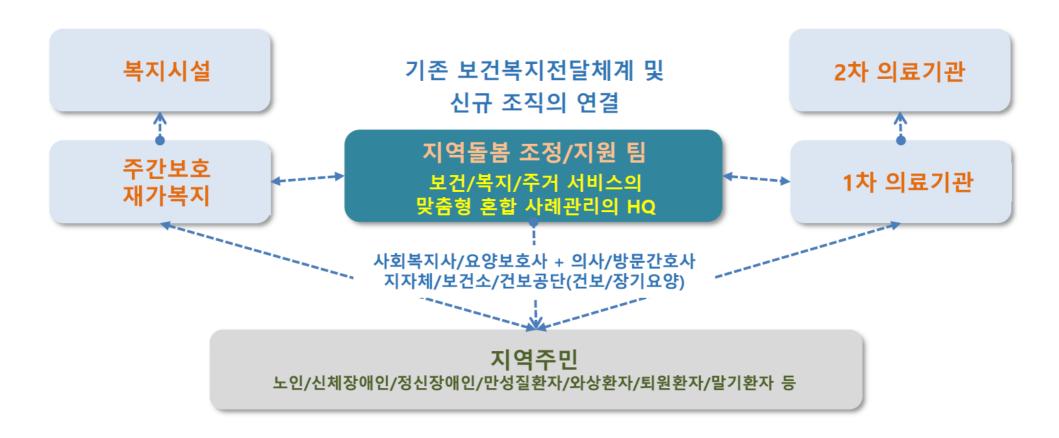
24조 전문인력의 양성

20조 통합지원협의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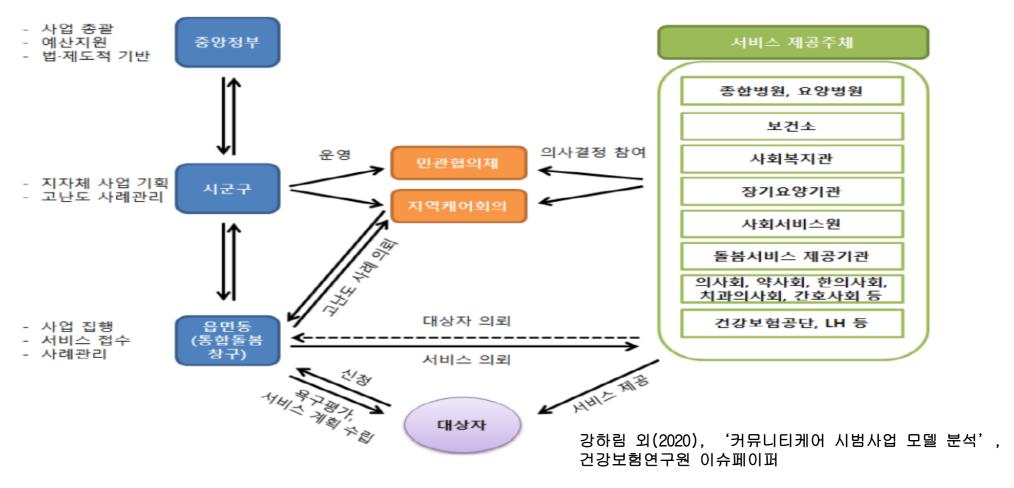
전문기관의 성격과 분포에 따라 통합돌봄의 미 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전문기관을 양분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1. 인력양성과 정보시스템 2. 서비스 제공 및 관리업무 위탁

22조 통합지원정보시스템

통합돌봄 전달체계 예시



지역통합돌봄 선도사업 당시 돌봄체계



❖ 제정 법에는 지역케어회의와 관련된 규정은 없음. 읍면동 통합돌봄이 단순 복수위탁사업이 되어버릴 우려도 있음.

통합지원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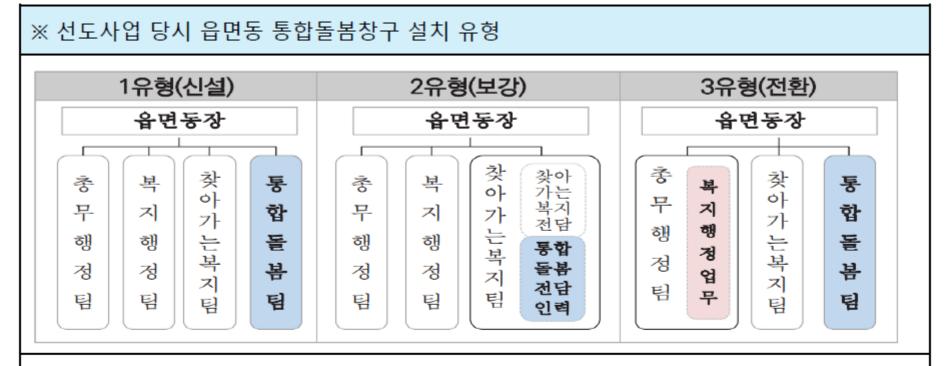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 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 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 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통합지원협의체의 독자성 및 구체적인 역 할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주장할 필요
- ❖ 읍면동 단위 자체적인 업무조정을 시군구 청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케어회의가 법 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활동 필요
- ✔ 시범사업의 서비스제공주체가 아닌 읍면동 실행 주체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자원 봉사모임,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 기반 사업법인, 마을공동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새로운 주체들의 결합방식을 고민하 고, 이것이 사회적경제 돌봄기업 및 의료 사협과 강하게 연계되는 구조를 정리해야)
 ⇒ 사회연대경제로 확장?

21조 전담조직

❖ 읍면동 통합돌봄창구의 설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음



-1유형: 통합돌봄팀 신설

-2유형: 찾아가는복지팀*에 통합돌봄전담인력 보강

-3유형: 복지행정업무를 총무팀에 이관하고, 복지행정계 계장 직제를 통합돌봄팀이 인수

21조 전담조직

❖ 기초 지역통합돌봄센터 -> 통합사례관리 기관 설치를 요구할 것인가 검토 필요(민주당안 참고)

(참고) 일본 지역포괄지원센터 설치

■ 개호보험법

제155조의46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제1호 개호예방지원사업 및 제155조의 45 제2항 각 호의사업(이하「포괄적 지원 사업」) 그 외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해, 지역 주민의 심신의 건강의 유지 및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원조를 실시함으로써, 보건의료의향상 및 복지의 증진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한다.

- 2. 시정촌은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3. 제155조의4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은 자는 포괄적 지원 사업 그 외 제1항의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해, 미리,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정촌장에게 신고해, 지역 포괄 지원 센터를 설치 할 수있다.
- 4. (생략)
- 5.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설치자는 포괄적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정촌의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6. 시정촌이 전항의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는, 지역 포괄 지원 센터의 직원에 관한 기준 및 당해 직원의 수에 대해서는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후생 노동성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참작하는 것으로 한다.
- 7. 내지 12. (생략)

돌봄통합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경제의 가능성과 해외 사례

영리기업은 이윤창출을 위해 시장에 열렬하게 개입한다



수목장 문화가 공원묘지에 적용된 사례

돌봄시장 : 14조5천억대(공단91%,본인9%)

< 한일 재가급여 지급 한도액 비교>

	일본	한국				
요개호도	1개월당 지급한도액(2020)	등급	1개월당 지급한도액 (2020)	1개월당 지급한도액 (2021)		
사업대상자	약 6만 엔	_		_		
요지원1	작 6년 앤	_	_	_		
요지원2	약 12만 엔	인지지원등급	566,600원	573,900원		
요개호1	약 18만 엔	5등급	1,007,200원	1,021,300원		
요개호2	약 21만 엔	4등급	1,173,200원	1,189,800원		
요개호3	약 29만 엔	3등급	1,276,300원	1,295,400원		
요개호4	약 33만 엔	2등급	1,331,800원	1,351,700원		
요개호5	약 39만 엔	1등급	1,498,300원	1,520,7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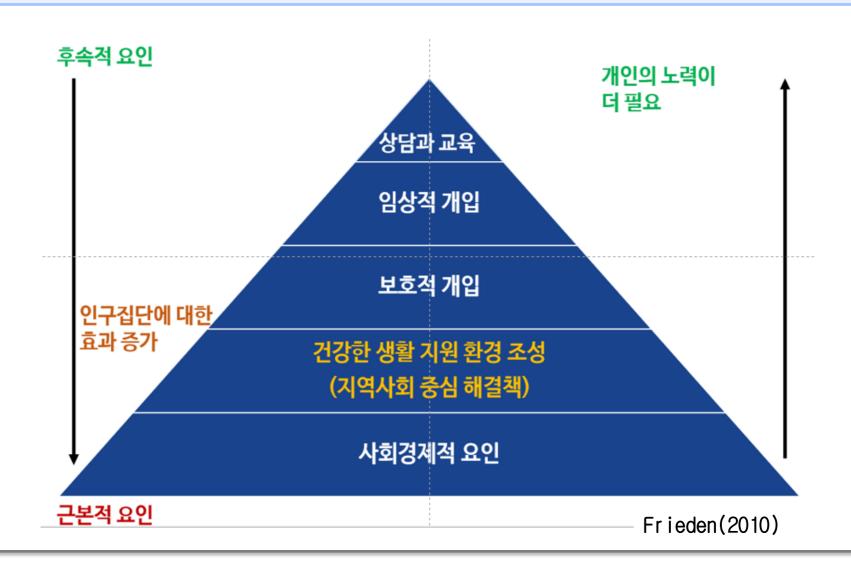
- ❖장기요양기관 28,366(재가 22천개, 시설6천여개)
- ❖경쟁구도 속에서 낮은 서비스 제공, 불만

구멍가게를 밀어낸 편의점처럼 재가돌봄주식회사가 온다

- ❖ 케이링, 케어닥, 케어네이션 등 재가돌봄기업 급성장
- ❖ 케어링㈜ 사례
 - •2019년 설립, 재가요양서비스 중심, 국내시장점유율 1위(1% 내외)
 - •2024년 누적 이용자 1만2천명. 총투자액 750억
 - •매출 : 21년 110억 → 22년 350억 → 23년 660억 → 24년 1.200억원 목표
 - •자회사 '케어링 커뮤니티케어 '설립(지역통합돌봄법 대응?)

건강영향 피라미드의 관점으로 보면 사회적경제가 정답이다.

사회적경제는 건강영향 피라미드의 모든 영역에서 개선활동이 가능함 구슬을 꿸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고, 각 파트의 활동 강화 필요



독일: 디아코니아 지역사회통합돌봄

독일은 비영리조직만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주체가 되도록 제도 정비







6개 비영리조직 중의 한 곳

직원 : 60만 2천명

자원봉사수: 70만 예산: 1조 5000억원

1848년 9월 개신교복지운동 비혜론 주창

"이웃사랑은 신앙의 본질에 해당된다"

네덜란드: 케어팜(사회적농장)을 통한 치매 관리

육체활동을 통한 장기기억의 자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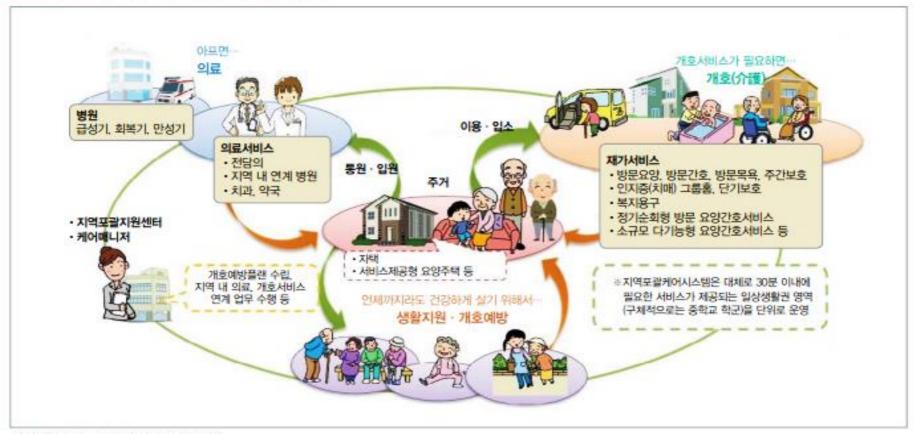




일본 :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 ❖ 정부, 지자체, 공공단체만아니라 돌봄을 실천하는 NPO,협동조합등의 연대와 협력, 주민조직, 자원봉사 활용등 고령자를 둘러싼 지역사회 전반의 의료, 복지 네트워크가 적극적으로 활용됨.
- ❖ 지역포괄지원센터
- ❖ 방문개호지원센터 / 방문간호스테이션 / 케어메니저 사업

그림 1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운영체계도



자료: 유애정, 김재윤, 황지영 2019.

의료,돌봄,주거 결합 지역포괄케어 모델 거점 형성: 카시와 市



돌봄통합법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실행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진영의 과제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모두의 연대와 협동을 이끌어 내야

사회적경제기업이 돌봄 실행의 중심이 되어 더 큰 연대를 이끌어 내어야

- ❖ 전국/광역 : 사회연대경제 연대 조직 + 시민단체 + 돌봄업종운동 + 전국단위 종교모임
- ❖ 시군구 : 사회연대경제기업 + 지역종교계 + 종교 및 선한 비영리복지돌봄조직
- ❖ 읍면동 : 주민자치 + 마을공동체 + 자원봉사(개인, 학생, 50+, 새마을조직 등)

각 영역에서 각자의 역할이 잘 분담되고 실행되어야 좋은 돌봄체계 구성 가능

- ❖ 전국/광역 : 법개정(비영리조직 우선 배정), 시행령 및 지침/전국계획 수립, 예산 확보
- ❖ 시군구 : 조례 및 시행지침 제정, 계획수립, 거버넌스 구성, 전담팀 확보, 예산 확보
- ❖ 읍면동 : 호혜적 돌봄을 위한 관계망 구성, 충실한 조사, 일상적 교육, 홍보, 환대

사회연대경제의 자원

전국/광역 단위: 사회적경제연대회의, 통합돌봄TF,

의료돌봄 업종연합, 광역네트워크

시군구 단위 : 의료사협 30, 돌봄기업 70, 시군구네트워크

읍면동 단위 : 마을관리사협, 생협 지역모임, 농협 등

사경의 활동 방향

- ❖ 통합돌봄의 핵심 업종은 의료사협과 돌봄기업!
- ❖ 시군구 단위로 돌봄부터 설립하고, 충실한 여건이 되는 시군구는 의료사협 설립 추진
- ❖ 둘 다 없는 곳을 파악하고, 빠져있는 시와 구에서 만들어지도록 연대하자.(업종변경 검토)
- ◆ 의료사협과 돌봄기업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경기업의 서비스를 결합하자.(사례: 사회주택, 상담관련 사경기업 등)

통합돌봄 대응 활동이 원활히 되기 위한 사회적경제 준비 모임의 활성화

감사합니다

